##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37 발의연월일: 2024. 10. 10.

발 의 자: 박지혜·김문수・박민규

정일영 · 허성무 · 채현일

김남근 • 박희승 • 김용만

용혜인 · 김성환 · 허 영

임호선 · 한창민 · 염태영

박정현 · 위성곤 · 오세희

민형배 • 박지원 • 박홍배

박해철 • 이소영 • 추미애

아호영 의원(25<u>인</u>)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파악하지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예산, 기금등이 온실가스 감축·배출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 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638호),「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를 "예산, 기금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변화에의 적응"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 <u>온실가스감축인지</u> 예산제	제24조( <u>기후위기인지</u> 예산제도) -
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	
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예산,</u>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	기금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	증감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변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	<u>화에의 적응</u>
용에 반영하는 <u>온실가스감축인</u>	<u>기후위기인지</u>
<u>지</u>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	
다.	